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차 례

I. 개 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5.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결산 검토	15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15
가. 결산 개요	15
나.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15
다. 총액인건비 외에서 총액인건비 내 보수(110-01)로 전용 부적정	20
2.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25
가. 결산 개요	25
나. 국내장기교육 훈련자 국외교육여비 적정 편성 필요	26
다. 부처가 불수용한 법령해석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8

3. 법령정보제공(1031-300)	34
가. 결산개요	34
나. 자문료 집행시기 분산 및 집행근거 마련 필요	35
다.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 관련 개선 필요	42
라. 독서대회 도서 저자 다양화 필요	46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49
가. 결산개요	49
나. 콘텐츠 현행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50
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운영	54
5. 법령심사지원(1032-300)	57
가. 결산 개요	57
나. 법령입법지원 자문의 하반기 집중 등	58
다. 법령입법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61
6. 법제정비(1032-301)	65
가. 결산 개요	65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66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73
가. 결산 개요	73
나.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필요	74

8.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79
가. 결산개요	79
나. 생성형 언어모델 법령정보서비스의 AI 환각 현상 대응 필요	80
9.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84
가. 결산개요	84
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85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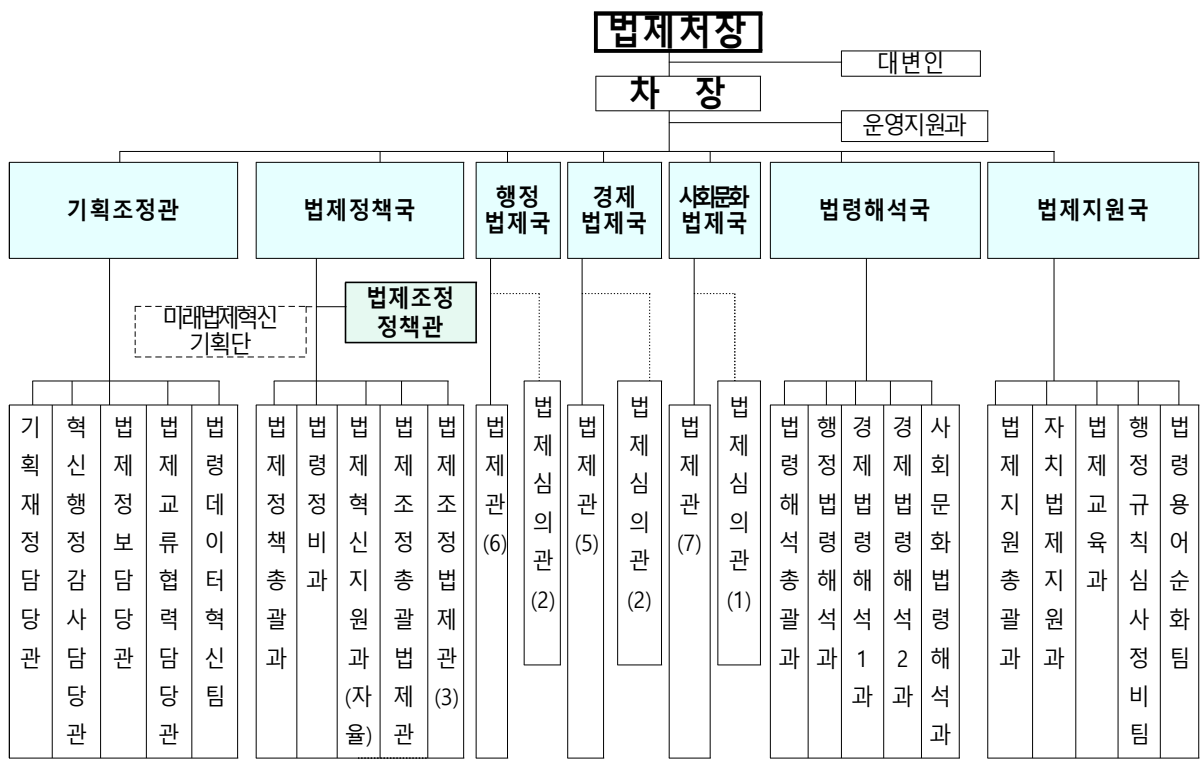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5년 6월 기준, 법제처는 1조정관, 6국, 1정책관, 5심의관, 22법제관, 17과(담당관), 3팀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239명이고 현원은 총 233명임.

【 법제처 조직도 】

(2025. 6. 1. 기준)



< 법제처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5. 6. 1. 기준)

구 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별정직	일반직
정 원	239	1	-	-	238
현 원	233	1	-	-	232

자료: 법제처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3	3	—	100.0%	—	—

□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3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과년도 보수 환수 및 단체보험료 환급금 289만원과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에 따른 징수액 11만원임.

【 2024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결산			2025예산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B/A(%)	
건물대여료	—	—	—	—	—	—
변상금	—	—	—	—	—	—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89,064	3,727	2,898	2,898	100.0	—
잡수입	53	170	111	111	100.0	—
총 계	289,117	3,897	3,009	3,009	100.0	—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 · 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 · 감액				
45,418	45,418	—	—	±250	45,418	44,290	—	1,128

□ 2024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54억 1,8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442억 9,000만원이고, 전용액은 2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1억 2,800만원임.

□ 지출액 442억 9,0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380억 9,4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239억 3,900만원 (54.1%)
- 물건비: 141억 5,500만원 (31.9%)
- 이전지출: 48억 2,200만원 (10.9%)
- 자산취득: 13억 7,400만원 (3.1%)

□ 전용액은 2억 5,0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이 이루어졌음.

- 공무원 보수 1억 8,900만원
-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기타직보수 4,700만원
- 교육훈련 대상자의 국외현장학습 국외교육여비 1,400만원

□ 불용액 11억 2,8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원, 물건비 9억 6,400만원, 이전지출 1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4년도 법제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총 계	40,670	42,622	45,418	45,418	44,290	97.5	45,733
1000 정부입법 총괄지원	40,670	42,622	45,418	45,418	44,290	97.5	45,733
1001 본부인건비	20,771	21,734	22,612	22,612	22,736	100.5	23,780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001-100)	20,771	21,734	22,612	22,612	22,736	100.5	23,780
1011 본부기본경비	3,669	4,235	5,032	5,032	4,750	94.4	5,235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11-200)	1,525	1,665	1,755	1,755	1,633	93.0	1,78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2,144	2,570	3,277	3,277	3,117	95.1	3,455

1031 법제정보서비스	3,901	3,997	4,708	4,708	4,540	96.4	4,596
법령정보제공 (1031-300)	2,086	1,890	1,718	1,718	1,643	95.6	1,552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795	1,085	1,662	1,662	1,610	96.9	1,682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1031-302)	1,020	1,022	1,328	1,328	1,287	96.9	1,362
1032 정부입법 총괄관리	2,224	2,249	2,406	2,406	2,191	91.1	1,981
법령심사지원 (1032-300)	367	354	335	335	286	85.4	311
법제정비 (1032-301)	1,427	1,211	1,324	1,324	1,236	93.4	1,184
행정법제 혁신 (1032-302)	430	684	747	747	669	89.6	486
1033 법제업무정보화지원	8,647	8,687	8,744	8,744	8,435	96.5	8,046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8,647	8,687	8,744	8,744	8,435	96.5	8,046
1034 법제전문성향상	1,383	1,646	1,848	1,848	1,574	85.2	2,045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1,121	1,412	1,555	1,555	1,294	83.2	1,802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262	234	293	293	280	95.6	243
1035 정책연구개발	74	74	68	68	64	94.1	50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74	74	68	68	64	94.1	50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22,650	22,887	△237	△1 %
부 채	1	-	1	100.0 %
순자산	22,649	22,887	△238	△1 %

□ 2024회계연도말 자산은 226억 5,00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말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소함.

- 유동자산 중 선급비용은 100만원 집계되어 전기대비 큰 변동 없으며, 기타유동자산은 관사 임차 재계약에 따라 전기 유동성 대체되었던 임차보증금 5억원이 당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정 분류됨에 따라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총 5억원 감소함.
-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당기에 1억 1,9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기타투자자산은 전기대비 5,500만원 증가함.
- 일반유형자산 중 건물은 신규 취득 없이 감가상각으로 전기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고, 구축물은 신규 취득 없이 감가상각으로 전기 대비 1억 2,500만원 감소함. 기계장치는 공기살균기 구매 등 신규 취득으로 1,4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2,100만원 감소

하여 전기대비 총 700만원 감소함.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전기복사기 구입 등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7,8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2억 2,7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1억 4,900만원 감소함. 기타일반유형자산은 보안용 카메라 등 신규취득으로 1,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1,6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총 600만원 감소함.

-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및 기타무형자산)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6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 등으로 20억 5,8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4억 4,300만원 감소함.
- 기타비유동자산은 전기 유동성 대체되었던 임차보증금 5억원이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정 분류 되었으며, 신규 임차 계약으로 인하여 4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전기대비 총 9억 5,000만원 증가함.

□ 2024회계연도말 부채는 예수금으로 100만원 집계됨에 따라 유동부채는 전기대비 100만원 증가함.

□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226억 4,9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¹⁾	48,185	43,506	4,679	10.8 %
II. 관리운영비 ²⁾	—	—	—	—
III. 비배분비용 ³⁾	—	—	—	—
IV. 비배분수익 ⁴⁾	19	58	△39	△67.2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48,166	43,448	4,718	10.9 %
VI. 비교환수익 등 ⁵⁾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48,166	43,448	4,718	10.9 %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8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800만원이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481억 8,500만원에서 지출반납금 등 비배분수익 1,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481억 6,600만원임.
-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4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고유사업 예산 집행액 증가 등이 반영된 것임.

-
- 1)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용에 해당함.
- 2)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함.
- 3)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임. 비배분비용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손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4)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임. 비배분수익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이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5)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기초순자산	22,887	20,150	2,737	13.6 %
II.재정운영결과	48,166	43,448	4,718	10.9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47,930	46,186	1,744	3.8 %
IV.조정항목	△1	△2	1	50.0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2,649	22,887	△238	△1.0 %

- 2024회계연도 말 기초순자산은 228억 8,7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481억 6,600만원이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및 기타 재원조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7억 4,400만원 증가한 479억 3,000만원임.
- 조정항목의 경우 자산재평가이익 100만원이 당해연도 감가상각과 상계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함.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합계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2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함.

5.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법제처는 2024년도에 “법제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법령안 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국가법령정보 관리·제공,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등을 추진하였음.

- 2024년도 법제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54억 1,800만원 중 44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은 97.5%임.

- 2024회계연도 법제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제처는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목)에서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하였는데, 유사한 사유로 인한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4년 중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인원수가 이미 2024년 예산안 편성 전에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하에 정해져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연례적 자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법제처는 2024년 12월 17일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 9,150만원을 총액인건비 대상인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전용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법제처는 국내과건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진행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1,393만원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집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④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안내가 없어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법령해석사례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⑤ 법제처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에서 4분기에 집중된 전문가 자문료 예산의 집행시기를 적정하게 분산하고, 자문료 지급의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기준 시점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핵심적 내용을 담은 미시행법률에 대한 설명을 두는 등 현행화와 관련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독서대회 도서의 저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⑥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현행성 있는 정보 전달이 미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사항 보고와 달리 일부 콘텐츠에서는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준비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⑦ 법제처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세미나가 법령의 개선방안, 향후의 입법론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현행의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⑧ 법제처는 법령입법지원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문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연중 자문료 집행의 효율성

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음.

⑨ 법제처가 법령입법지원을 한 후 입법예고안에 반영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지원과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사전절차의 직접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⑩ 법제처가 법제정비 사업 내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은, 용역 결과가 최종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실제 법령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의 내용도 경미한 수정에 불과하여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장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⑪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사업의 정책연구비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일부 개선과제가 사업 목적과 달리 법제도 개선이 아닌 행정적 개선사항에 그치는 점, 타 연구용역에 비해 평균 용역 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개선과제 도출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⑫ 법제처는 정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신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⑬ 법제처는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설립 준비 중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운영계획이 그 목적에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고, 참가 국가가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연계하는 등 양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II. 결산 검토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가. 결산 개요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는 법제처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226억 1,2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전용 증액하고 예산현액 227억 6,400만원 중 22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00만원을 불용함.

【 2024년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인건비	22,612	—	152	—	22,764	22,736	—	28	23,780
- 보수 (110-01)	22,144	—	142	—	22,286	22,269	—	17	23,224
- 기타직보수 (110-02)	292	—	47	—	339	336	—	3	375
- 연가보상비 (110-05)	176	—	△37	—	139	131	—	8	181

자료: 법제처

나.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 2024년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된 예산은 2억 9,200만원으로

전용 4,7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3,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함.

- 기타직보수(110-02목)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 지급액이 정해진 기타 직종에 대한 보수인데, 법제처는 2024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 수요(5, 7급 채용후보자 다수)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110-01목) 중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타직보수의 경우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규공무원이 임용 전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법제처는 동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과 같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타직보수 예산의 과소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9~2024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본예산	추경					
2019	14	14	131	145	137	8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0	268	268	-	268	237	31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1	261	261	27	288	281	7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4명
2022	235	235	25	260	254	6	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인원 3명
2023	251	251	100	351	329	22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7명
2024	292	292	47	339	336	3	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인원 7명

자료: 법제처

【 2019~2024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로의 전용 사유 】

연도	전용 금액	전용사유
2019	1억 3,100만원	전문임기제 임용 등에 따른 보수의 기타직보수로의 세목조정
2021	2,700만원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 일부를 기타직보수로 전용
2022	2,500만원	
2023	1억원	
2024	4,700만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 수요(5, 7급 채용후보자 다수)가 발생하여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110-01) 중 예상부족액을 기타직보수로 전용

자료: 법제처

□ 특히 법제처가 제출한 기타직보수의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5급 경력채용자 4인의 교육기간 임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타직보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4인의 채용은 법제처가 2024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2023년 5월 31일)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안이었음.⁶⁾

법제처는 2023년 4월 11일 인사혁신처에 5급 민간경력자 4인의 채용 수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⁷⁾ 인사혁신처는 2023년 4월 21일 법제처 4명이 포함된 경력채용자 선발공고를 발표하였음.⁸⁾ 필기시

6)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제처,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수요조사 안내 회신(추가), 2023. 4. 11.

8)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3호,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 4. 21.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상략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법제처	4
하략			

협과 면접시험을 거쳐 2023년 12월 29일에 4인이 최종 합격하였고, 2024년 2~3월 수습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후 4월부터 법제처에서 근무하였음.

법제처에서는 통상 매년 12월말 채용이 확정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 당시 해당 인원에 대한 보수를 편성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용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타직보수(110-02)를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집행지침에 맞지 않음.

【 2024년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 편성 대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소속	예산편성액	집행금액
전문임기제	나급	법령용어순화팀	243,816	77,709
	다급	대변인실		49,589
	다급	대변인실		25,491
	라급	대변인실		57,993
	라급	대변인실		51,168
	소계 (예산 대비 집행액)			261,950 (+18,134)
경채	5급	법령검토지원팀	-	5,416
	5급	행정법제국		5,505
	5급	행정법제국		5,416
	5급	법제조정법제관실		5,416
	소계(예산 대비 집행액)			+21,753
실무수습 (지역인재)	7급	법령해석총괄과	48,566	8,725
	7급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2,179
	7급	법령데이터혁신팀		21,847
	소계 (예산 대비 집행액)			52,751 (+4,185)
합계			292,382	336,454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25년 예산에는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고자 예산 부족분을 미리 산출하여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의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이와 같은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총액인건비 외에서 총액인건비 내 보수(110-01)로 전용 부적정

- 2024년 보수(110-01목) 예산은 221억 4,400만원으로 전용 1억 4,200만원(전용 증액 1억 8,900만원, 전용감액 4,700만원)을 포함한 총 222억 8,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2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함.

보수(110-01목)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법제처는 인건비 자연증가율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낮아 2024년 보수에 부족이 있어 1억 8,900만원을 전용 증액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전용액의 원천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2024년 12월 17일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법제정비, 법제업무 정보화추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9,150만원 전용하였으며,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총

액) 등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에서 9,750만원을 전용함.

- 이 중 총액인건비 외 사업에서 전용한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 보수(110-01목)로의 사업별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전용일	구분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금액
2024.12.17.	총액인건비 대상사업	인건비 (1001-100)	연가보상비 (110-05)	37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1011-200)	상용임금 (110-03)	2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1011-200)	일용임금 (110-04)	37.5
		소계		97.5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	법령정보제공 (1031-300)	상용임금 (110-03)	2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상용임금 (110-03)	7.5
		법령심사지원 (1032-300)	상용임금 (110-03)	28.5
		법제정비 (1032-301)	상용임금 (110-03)	41
		법제업무정보화추진 (1033-500)	상용임금 (110-03)	3
		법제 교육및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상용임금 (110-03)	7
		법제 교육및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일용임금 (110-04)	2.5
		소계		91.5
	총계			189

자료: 법제처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2024년도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되,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 그러나 법제처는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으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으로의 전용을 통해 총액인건비 규모를 증액시켜, 위의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별첨〉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 운영 개요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특히 법제처는 이미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로부터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지적받아,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완료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¹⁰⁾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2024년에는 이조차 거치지 않음.

【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15)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지적사항] 1.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를 확대하는 예산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3억 9,361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4억 4,951만원을 전용해서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 조직수요 예측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 노력	조치완료 (2019.4.30.)
시정요구 유형			
주의	○ [시정요구사항] 1. 법제처는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것		

□ 따라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10) 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4. 30.

인건비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비대상사
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2024년도 예산은 총 3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400만원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세목조정되었고, 31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관운영기본경비	3,277	3,277	-	±14	3,277	3,117	-	160	3,455
일반수용비	1,527	1,527	-	△14	1,513	1,499	-	15	1,658
공공요금및제세	85	85	-	-	85	59	-	25	101
피복비	-	-	-	-	-	-	-	-	0.6
급식비	3	3	-	-	3	3	-	-	3
임차료	250	250	-	-	250	176	-	75	278
유류비	15	15	-	-	15	10	-	5	15
시설장비유지비	94	94	-	-	94	78	-	16	100
일반용역비	111	111	-	-	111	103	-	8	145
국내여비	186	186	-	-	186	179	-	8	228
국외업무여비	16	16	-	-	16	11	-	6	16
국외교육여비	-	-	-	14	14	14	-	-	-
관서업무추진비	149	149	-	-	149	149	-	-	179
포상금	0.1	0.1	-	-	0.1	-	-	0.1	0.1
공사비	75	75	-	-	75	75	-	-	160
자산취득비	315	315	-	-	315	311	-	4	521
무형자산	450	450	-	-	450	450	-	-	50

자료 : 법제처

나. 국내장기교육 훈련자 국외교육여비 적정 편성 필요

-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2차례에 걸쳐 1,393만원을 전용하였음. 법제처는 국내과건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함.

【 2024년 일반수용비 → 국외교육여비 전용 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원)	~으로		집행내역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8.29.)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9,287,00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경비
전용 (‘24.9.9.)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4,638,00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
합계			13,925,000			

자료: 법제처

- 그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장기교육의 경우 모집 시점에 대략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가 교육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외현장학습 경비를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예산비목인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 후 수시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법제처는 매년 국내장기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와 국외교육여비를 함께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외교육여비는 편성되지 않아 매년 일반수용비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안은 집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외현장학습의 경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외교육여비로 계상되어 다른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부처가 불수용한 법령해석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¹¹⁾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 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정부 견해를 통일하기 위하여 전체 정부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 법령해석제도 운영 개요 】



11) 법령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음.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의 법집행 작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른 행정작용이 행정쟁송으로 발전되어 법원에서 다른 사법해석을 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 그러나 일부 법령해석 사례에 있어서는 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령해석 사례도 법령해석의 결과가 해석 요청자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에게 즉시 회신되고, 온라인에도 법령해석의 내용이 게시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해당 부처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측정한 법령해석결과 부처수용률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결과 불수용률이 2024년 기준 1.9%, 2023년은 2.3% 수준으로, 매년 불수용하는 건들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2년간 부처가 불수용한 법령 해석 사례를 보면, 2023년 불수용 11건 중 3건, 2024년 불수용 8건 중 4건이 부처에서 불수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고, 나머지 건들은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결과 수용 현황 】

연도	회신 건수	수용	불수용
2020	454	441(97.1%)	13(2.9%)
2021	470	467(99.4%)	3(0.6%)
2022	470	458(97.4%)	12(2.6%)
2023	490	479(97.8%)	11(2.3%)
2024	415	407(98.1%)	8(1.9%)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법령해석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고 있으며,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는 분기별로 사후에 조사하므로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질의 주체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소관 부처의 수용 여부 및 불수용 사유를 법령해석 요청기관이나 민원인에게 통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중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해석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 없이 부처가 동의한 해석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부처 불수용 법령해석례 공개 사례(예시) 】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Legal Interpretation Center (국가법령정보센터) website. The search results for 'Building Code Interpretation Case' (건축법령해석례) are displayed. The first result i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Building Code Interpretation Cas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Code regarding the connection of the highest floor and the floor below it in a building'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The second result i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Building Code Interpretation Cas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Code regarding the connection of the highest floor and the floor below it in a building'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부처가 수용하지 아니한 법령 해석례도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 없이 제공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신뢰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기초해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는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법령해석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¹²⁾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법제처는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법령해석사례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부처 불수용 법령해석 사례 목록(2023년, 2024년) 】

연번	안건명	소관부처	불수용사유
1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다른 건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부터 2020년 9월 16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가 다른 건설업으로의 전환 등록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수용여부 미회신
2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조합원으로서 권리 행사 고려 필요
3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적용 시 시정명령 생략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반대 및 안전사고 우려
4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 확보해야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수용여부 미회신
5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여부 미회신
6	종전의 질병휴직 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질병사유로 질병휴직을 하려는 경우, 질병휴직 기간의 산정방식	행정안전부	관련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

12) 법제처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723건, 2023년 1,182건)하고 있고,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390건, 2023년 696건)함.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건수>

구분	접수 건수(건)		철회 건수(건)		회신 건수(건)	
	전체	민원인	전체	민원인	전체	민원인
2020	723	390	66	29	454	228
2021	923	518	58	40	470	259
2022	1,013	604	91	60	470	281
2023	1,182	696	139	82	490	279
2024	1,010	654	74	45	415	273
계	4,851	2,862	428	256	2,299	1,320

자료: 법제처

7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수용여부 미회신
8	불안묘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수용여부 미회신
9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 시기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특허청	수용여부 미회신
10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 여부	환경부	수용여부 미회신
11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해양수산부	수용여부 미회신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의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만으로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 중지 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실효적·통일적 제도 운영상 곤란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같은 법 제7조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실효적·통일적 제도 운영상 곤란
14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 건축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의 일관된 해석 및 적용 필요
15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되는지	환경부	수용여부 미회신
16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 항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용여부 미회신
17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계단 면적 산정 대상 범위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18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수용여부 미회신
19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기획재정부	수용여부 미회신

자료: 법제처

3. 법령정보제공(1031-300)

가. 결산개요

□ 법령정보제공(1031-30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안이나 법제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 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함.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총 1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만원이 인건비(1001-100)로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7억 1,600만원

중 16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718	1,718	-	△2	-	1,716	1,643	-	73	1,552

자료: 법제처

나. 자문료 집행시기 분산 및 집행근거 마련 필요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하 “한눈보기 사업”이라 함)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200만원이 전용되었고, 4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718	1,718	-		1,716	1,643	-	73	1,552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85	885	-	-	885	846	-	39	746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372	372	-	-	372	356	-	16	35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461	461	-	△2	459	440	-	19	453

자료: 법제처

- 2024년 한눈보기 사업예산 4억 6,100만원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한눈보기 콘텐츠 개발 용역비(210-14목) 3억 1,200만원,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4,800만원, 연구원 인건비 9,300만원, 기타경비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 이 중, 한눈보기 콘텐츠 개발 용역비(210-14목) 2억 9,600만원,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4,600만원, 연구원 인건비 8,800만원, 기타경비 1,0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한눈보기 사업 세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내역사업 총액		461	461	△2	459	440	19
	상용임금	110-03	77	77	△2	75	74	1
	일반수용비	210-01	52	52		52	51	1
	복리후생비	210-12	1	1	-	1	1	-
	일반용역비	210-14	312	312	-	312	296	16
	국내여비	220-01	2	2	-	2	2	-
	사업추진비	240-01	3	3	-	3	3	-
	고용부담금	320-09	15	15	-	15	13	2

자료: 법제처

- 한눈보기 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매년 30~40개씩 선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¹³⁾ 이용자에게 그림·사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며,

13) <https://www.law.go.kr/LSW/main.html>

연간 사업 일정을 살펴보면 4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2·3단계에서 시각 콘텐츠 초안에 대한 검토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각 법제처(1차), 전문가(2차) 및 소관 부처(3차)의 검토를 받고 있음.

【 한눈보기 사업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내용 확정 ·개발 대상 조문 선정	·시각 콘텐츠 초안 기획 ·1차 검토(법제처)	·시각 콘텐츠 수정 ·2차 검토(전문가) ·3차 검토(소관 부처)	·시각 콘텐츠 최종수정·확정 ·시각 콘텐츠 탑재·제공

자료: 법제처

□ 위 절차 중 전문가(2차) 검토절차에서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예산이 집행되는바, 2024년도에는 자문료 편성예산 4,800만원 중 4,586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자문 내용	집행액
24.10.08.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기존 콘텐츠 개선)	4,160
24.10.08.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 (보건 1차)	3,520
24.10.16.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 (사회복지 1차)	7,280
24.10.16.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보건 2차)	6,320

일자	자문 내용	집행액
24.10.11.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농림·축산·수산 1차)	6,480
24.11.26.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보건 3차)	2,240
24.12.02.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농림·축산·수산 2차)	3,520
24.12.04.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농림·축산·수산 3차)	3,280
24.12.04.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기존 콘텐츠 개선 2차_노동·부동산·안전)	1,480
24.12.04.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기존 콘텐츠 개선 2차_조세)	1,280
24.12.03.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사회복지 2차)	3,900
24.12.26.	한눈법령 콘텐츠 개발 (디자인)	2,400
합 계		45,860

자료: 법제처

- 그런데, 한눈보기 콘텐츠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시기를 살펴보면 2024년도 4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24년도 3분기까지는 자문료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전문가 자문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시각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2차 검토로서 한눈보기 사업 절차의 4단계 중 3단계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자문 및 자문료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문위원별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16만원부터 96만원까지 다양한 액수로 지급되었는데, 자문료가 어떠한 범위에 근거하여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금액에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 2024년도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예산의 자문위원별 지급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자문위원	지급액
24.10.8.	변호사 서○○ 법률사무소 서○○	800
	변호사 추○○ 법률사무소 추○○	160
	법무법인 유준 임○○	800
	변호사 박○○·박○○ 법률사무소 박○○	800
	위드세무회계 박○○	640
	노무법인 숲 임○○	240
	안목노무사사무소 이○○	240
	근로복지공단 정○○	240
	노무법인 숲 권○○	240
24.10.8.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손○○	880
	한국법제연구원 윤○○	880
	(사)미래소비자행동 조○○	880
	원광대학교 최○○	880
24.1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	440
	국민건강보험공단 박○○	440
	국민건강보험공단 박○○	4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	440
	단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 정○○	800
	법무법인 정원 송○○	800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부 석○○	8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800
	한국보육진흥원 허○○	580
	육아정책연구소 배○○	580
	육아정책연구소 김○○	580
	한국보육진흥원 김○○	580
24.10.16.	변호사한○○법률사무소 한○○	78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	780
	국립군산대학교 박○○	780
	동국대 법학과 김○○	780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한○○	80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800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손○○	800
	대한간호협회 박○○	800
24.1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	820

일자	자문위원	지급액
	한국법제연구원 왕○○	820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	820
	동국대학교 식품의약품규제정책학과 류○○	8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	800
	이&강 산림행정사 합동사무소 이○○	800
	한국산지보전협회 송○○	800
	국토연구원 김○○	800
24.11.2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	300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	300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	3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	30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김○○	520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520
24.12.2.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임○○	880
	한국수산법제연구소 배○○	880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류○○	880
	국립부경대학교 신○○	880
24.12.4.	한국법제연구원 한○○	820
	동물자유연대 채○○	820
	한국법제연구원 장○○	820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김○○	820
24.12.4.	근로복지공단 정○○	240
	노무법인 숲 임○○	280
	안목노무사사무소 이○○	240
	노무법인 숲 권○○	280
	법무법인 유준 임○○	200
	변호사 추○○ 법률사무소 추○○	240
	변호사 박○○·박○○ 법률사무소 박○○	200
24.12.4.	변호사 서○○ 법률사무소 서○○	200
	변호사 추○○ 법률사무소 추○○	560
	위드세무회계 박○○	32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500
24.12.3.	국민건강보험공단 박○○	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	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500
	한국법제연구원 강○○	960
	국민연금공단 양○○	520
	국민연금공단 이○○	420

일자	자문위원	지급액
24.12.26.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강OO	600
	대전디자인진흥원 엄OO	600
	한국디자인진흥원 이OO	600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이OO	600

자료: 법제처

- 따라서 향후 법제처는 한눈보기 콘텐츠 자문료 예산의 집행시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 시기를 적정하게 분산하고, 자문료 지급의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자문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 관련 개선 필요

- 한눈보기 사업의 목적은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사진·절차도·관계도·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한눈보기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런데, 「건축법」의 경우 2023년 이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자연유산 등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¹⁴⁾되는 등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시각 콘텐츠에는

14)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운전보안시설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다. 플랫폼
 -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③ (생략)

2022년 4월 20일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음.

적용 제외 건축물



지정문화유산 등



플랫폼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보행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 대지에 이동이 쉬운 것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본 콘텐츠는 2022년 4월 20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 또한, 「국민연금법」의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에서 군복무와 관련한 연금가입기간의 변경이 있음¹⁵⁾에도 그에 대한

15)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설명 없이 현행법 규정만을 설명해놓고 있음.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가입기간에 6개월 추가 산입**
 (병역의무 수행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9조에 따라,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

↓

각 재직 · 복무기간에 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6개월 추가 산입 예외

* 이 콘텐츠는 2024년 9월 20일 기준이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에도 기준시점 안내 문구를 변경하지 않거나, 미시행 법률의 경우 시각 콘텐츠에는 반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② ~ ④ (생략)

영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해당 법률이 공지되었다는 입장이나,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와 관련하여 기준시점이 잘못 기재되거나 핵심적 내용을 담은 미시행법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정부 기관의 콘텐츠를 신뢰한 국민에게 오해를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제처는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현행화와 관련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라. 독서대회 도서 저자 다양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전국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 후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3억 7,200만원 편성되었고, 3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718	1,718	-		-	1,716	1,643	-	1,552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85	885	—	—	885	846	—	39	746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372	372	-	-	372	356	-	16	353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461	461	-	△2	459	440	-	19	453

자료: 법제처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및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토론마당, 기본법제교육, 법기관 탐방, 법안 만들기, 독서대회 등의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

입법체험활동명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토론마당	어린이·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기본법제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참여심사	법제관이 되어 모의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활동 실시
법기관 탐방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법 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법안 만들기	모의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 제출
어울림한마당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한마당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 격려를 위한 수료 행사 진행

자료: 법제처

- 입법체험활동 중 독서대회는 2023년부터 시행하였고,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대상 법 관련 도서 배포 → 감상문 모집·접수
→ 1차 심사(10배수, 어린이·청소년 각 30편 선정) → 2차 심사(어린이·청소년 각 상위 3편 선정) → 우수작품 발표 및 상품 수여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및 2024년 독서대회 운영현황 】

구분		대상 도서	대상인원	감상문 제출인원
2023년	어린이 법제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지은이: 신○○)	885명	223명 (25%)
	청소년 법제관	헌법 다시 읽기(지은이: 양●●)	370명	96명 (26%)
2024년	어린이 법제관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 (지은이: 예◎)	507명	358명 (71%)
	청소년 법제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지은이: 양●●)	310명	207명 (67%)

자료: 법제처

□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독서대회 도서의 저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에게 법의 개념이나 역할, 권리와 책임, 공동체 규범 등 법과 관련된 주제를 연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서를 선정하였다는 입장이나,

1년에 한 번 열리는 독서대회에서 동일한 저자의 책이 연이어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법제처는 독서대회 도서 선정에 있어 특정 저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가. 결산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는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총 1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2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328	1,328	-	-	1,328	1,288	-	40	1,362
상용임금	29	29	-	-	29	28	-	1	30
일반수용비	17	17	-	-	17	15	-	2	10
공공요금 및 제세	5	5	-	-	5	-	-	5	-
특근매식비	6	6	-	-	6	6	-	-	6
임차료	1	1	-	-	1	1	-	-	1
복리후생비	1	1	-	-	1	1	-	-	1
국내여비	10	10	-	-	10	10	-	-	10
사업추진비	1,253	1,253	-	-	1,253	1,221	-	32	1,298
민간위탁사업비	6	6	-	-	6	6	-	-	6
고용부담금	5	5	-	-	5	5	-	-	6

자료: 법제처

나. 콘텐츠 현행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소개하는 법령정보 중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함께 제공되는 연관 법령정보 또한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변경된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법령정보원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 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현행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월 단위로 콘텐츠 인용 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류 신고 게시판 및 유선 등을 통해 상시 오류 신고를 받아 검토 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법제처로 직접 소관 부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e-mail 등을 통해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공유하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법령의 제·개정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법제처에서는 2025년부터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였다고

밝혔음에도 월마다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오류 신고 접수만으로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임.

- 예를 들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4년 10월부터 시행중이고, 동법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경우 기존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채권추심의 규제와 처벌요건이 상당히 변화하였는데¹⁶⁾ 2025년 5월 기준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대부업체 이용자” 페이지에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¹⁷⁾
- 또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미 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안내하거나 법령의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16) 예를 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한 요건을 추상적으로 두고 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추심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7) 법제처는 위 지적을 받은 후 2025년 6월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업데이트함.

□ 국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법제처는 “시행 전 법령 안내 관련 관리 시스템을 2025년 상반기 내 마련하여 주요한 시행 예정 관련 콘텐츠에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링크를 안내하겠다”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으나,¹⁸⁾ 일부 콘텐츠에서는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1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는데,¹⁹⁾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2025년 7월말 현재까지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²⁰⁾ 최대 연 20%가 적용된다고 적시하고 있음.²¹⁾

18) 정부,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 전 조문)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 준용(準用)되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규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5&ccfNo=1&cciNo=2&cnpClsNo=1&search_put=, 검색일 2025. 7. 26.)

-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 이전이라도 시행 예정 조문에 대한 안내문구 등을 함께 제공하거나, 개정 시기에 맞추어 개정 법령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데이트를 해두고 시행일에 맞추어 노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준비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사업 목적과 무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운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각 부처별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나열된 법령정보를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임.
- 법제처는 이 사업에서 매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2024년에는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988만원의 비용을 지급함.

【 202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행사 개요 】

○ 일시: 2024. 11. 8.(금) 오후 13:30 ~ 16:00 ○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석인원: 48명(발표·토론자, 법제처·법령정보원 관계자 등) ○ 집행액: 총 9,879천원(일반수용비 4,549천원, 임차료 5,330천원)
〈세션 1〉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생활법령정보 － 발표: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2) 한정민 노무사(법무법인 광화문)
〈세션 2〉 이제는 지방시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생활조례정보 제공 확대방안 － 발표: 김희진 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 토론: (1) 최대일 변호사(법무법인 산) (2) 전성휘 전문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조례생활법령부)

자료: 법제처

- 2024년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는 각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세션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션 제목에는 ‘생활법령정보’와 ‘생활조례정보 제공’을 넣어두었으나 주제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건 모두 법령의 개선방안, 향후의 입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음.

- 세션 1의 발표자료 제목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로, 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②출산율 제고,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헌법과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등) 개정 방안을 다루고 있음.

세션 2의 발표자료 제목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맞춤형 생활조례정보의 방향”이나, 발표자료 내에서 현재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생활조례 정보’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역소멸 관련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지역소멸 관련 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조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생활법령정보사업은 현행의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위의 두 발표자료는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법제처는 연례적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향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법령심사지원(1032-300)

가. 결산 개요

- 법령심사지원(1032-300)은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이 있음.
 - (법령심사지원)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법령입법지원)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지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법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업무평가 실시를 통한 일선기관의 법제업무역량 강화 지원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총 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5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예산현액 3억 7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법령심사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35	335	-	△28.5	307	286	-	20	311
법령심사지원	111	111	-	-	111	100	-	11	160
법령입법지원	170	170	-	△28.5	142	134	-	7	151
법제업무 역량강화	54	54	-	-	54	52	-	2	-

자료: 법제처

나. 법령입법지원 자문의 하반기 집중 등

- 법령입법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해 법제처가 입안단계부터 조문화 및 법리적 쟁점 검토를 지원하는 법령심사지원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 예산 1억 1,1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법제처는 법령입법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있거나, 조세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2024년에는 총 18건의 자문을 49명(중복 제외시 25명)에게 실시하여 총 1,535만원을 자문료로 집행하였음.

【 2024년 분기별 법령입법지원 자문 실적 】

구분	자문 내용	자문위원	자문료	집행액
1분기	선박안전법 관련 검토	음○○, 김○○, 방○○	각 30만원	90만원
	소계			90만원
2분기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관련 검토	남○○, 정○○, 정○○	각 30만원	90만원
	항공안전법 관련 검토	김○○, 박○○, 손○	각 30만원	90만원
	소계			180만원
3분기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관련 검토	기○○, 정○○, 이○○	각 30만원	90만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	방○○, 김○○, 최○○	각 30만원	90만원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관련 검토	김○○, 박○○, 조○○	각 30만원	90만원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관련 검토	김○○, 박○○, 최○○	각 30만원	90만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	박○○, 김○○	각 35만원	7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검토	김○○, 정○○, 정○○	각 35만원	105만원
	복권 및 복권 자금법 시행령 관련 검토	김○○, 박○○, 정○○	각 30만원	90만원
	소계			625만원

구분	자문 내용	자문위원	자문료	집행액
4분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검토	문○○, 한○○, 기○○	각 30만원	90만원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검토	김○○, 최○○	각 30만원	60만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검토	김○○, 김○○	각 30만원	60만원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	김○○, 이○○, 양○○	각 35만원 (이○○ 30만원)	100만원
	행정사법 시행령 관련 검토	박○○, 정○○, 음○○	각 30만원	90만원
	건축법 시행령 관련 검토	정○○, 정○○	각 40만원	80만원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검토	조○○, 최○○, 이○○	각 30만원	9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고시안 관련 검토	김○○, 정○○	각 35만원	70만원
	소계			640만원
계	총 18건	중복 제외시 총 25명 (중복 허용시 총 49명)	1건당 평균 약 85만원	1,535만원

자료: 법제처

□ 2024년 자문료의 분기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1건의 자문을 시행하여 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분기에는 2건의 자문에 180만원, 3분기에는 7건에 총 625만원을, 4분기에는 8건에 총 64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약 82%를 하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의 자문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자문 시행과 자문료 집행 간의 시차(時差)가 발생함에 따라 자문료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문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상반기 집행액은 동일하고, 80% 이상의 자문이 하반기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집행잔액 소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지출로 볼 소지가 있는바, 연중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자문료 지출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법제처는 전체 자문위원 인력풀 중 한명뿐인 세법 전공 자문위원에게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를 자문하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문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²²⁾

□ 따라서 법제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외부 전문가 자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편중된 자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 2024년 세법 전문가에 대한 법령입법지원 자문 실적

자문위원	현직위 및 경력	전문분야	자문내용	자문료
양○○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세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	35

다. 법령입법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 법령입법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령안에 대해 법제전문가가 소관 부처의 입안단계부터 조문화 및 법리적 쟁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최근 3년간 법률안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4년 17.4%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법률 입법지원 건수 및 입법예고안 반영 건수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률 입법지원 건수(A)	91건	101건	63건	69건
입법예고안 반영 건수(B)	30건	34건	14건	12건
법률 입법지원이 부처 입법예고로 이어지는 비율(B/A)	32.9%	33.7%	22.2%	17.4%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 후 소관 부처에서 의원입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부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입법계획이 수정·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법률 입법지원의 입법예고 반영 비율은 하위법령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에 입법예고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 최근 4년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지원 건수 및 입법예고안 반영 건수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행령	시행령 입법지원 건수(A)	125건	144건	111건	108건
	입법예고안 반영 건수(B)	94건	112건	67건	49건
	시행령 입법지원이 부처 입법예고로 이어지는 비율(B/A)	75.2%	77.8%	60.4%	45.4%
시행규칙	시행규칙 입법지원 건수(A)	49건	62건	60건	67건
	입법예고안 반영 건수(B)	41건	47건	44건	30건
	시행규칙 입법지원이 부처 입법예고로 이어지는 비율(B/A)	83.7%	75.8%	73.3%	44.8%

자료: 법제처

- 시행령의 입법예고 반영 비율은 2021년 75.2%, 2022년 77.8%에서 2024년에는 45.4%로 감소하고 있고,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반영 비율은 2021년 83.7%에서 2024년 44.8%로 감소함.
- 물론 입법지원 이후 입법예고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최근연도의 입법지원일수록 입법예고가 아직 되지 않은 건들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입법지원 이후 연차별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살펴해보아도, 입법지원 당해연도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연차별 입법지원의 입법예고안 반영 현황 】

입법지원 건수			2021	2022	2023	2024	2025.6.	계
법률	2021 (비율)	91	15	7	4	4	0	30
			16.5%	7.7%	4.4%	4.4%	0.0%	33.0%
	2022 (비율)	101	—	17	9	8	0	34
			—	16.8%	8.9%	7.9%	0.0%	33.7%
	2023 (비율)	63	—	—	8	5	1	14
			—	—	12.7%	7.9%	1.6%	22.2%
시행령	2021 (비율)	125	59	24	3	8	0	94
			47.2%	19.2%	2.4%	6.4%	0.0%	75.2%
	2022 (비율)	144	—	73	26	13	0	112
			—	50.7%	18.1%	9.0%	0.0%	77.8%
	2023 (비율)	111	—	—	50	15	2	67
			—	—	45.0%	13.5%	1.8%	60.4%
시행규칙	2021 (비율)	49	30	7	4	0	0	41
			61.2%	14.3%	8.2%	0.0%	0.0%	83.7%
	2022 (비율)	62	—	29	9	9	0	47
			—	46.8%	14.5%	14.5%	0.0%	75.8%
	2023 (비율)	60	—	—	26	16	2	44
			—	—	43.3%	26.7%	3.3%	73.3%
	2024 (비율)	67	—	—	—	22	8	30
			—	—	—	32.8%	11.9%	44.8%

- 법률안에 대한 입법지원 후 당해연도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2021년 16.5%, 2022년 16.8%에서 2023년에는 12.7%, 2024년에는 14.5%로 최근 2년간 과거연도에 비해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남.

시행령의 경우 2021년 47.2%, 2022년 50.7%, 2023년에는 45.0%에서 2024년 24.1%로 감소함. 시행규칙 역시 2021년 61.2%에서 2024년에 32.8%로 당해연도 입법예고 반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법령입법지원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로 인한 비효율을 축소하고 부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법률안에 관하여는 입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최근연도로 올수록 입법지원사업의 입법예고 반영 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제처는 최근 입법지원을 거친 법령안에 대하여 기존 법제 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법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향후 입법지원과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사전절차의 직접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법제정비(1032-301)

가. 결산 개요

- 법제정비(1032-301)는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 보장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총 1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4,100만원을 감액전용하여 예산현액 12억 8,300만원 중 1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법제정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1,324	1,324	-	△41	1,283	1,236	-	47	1,184
법령정비	494	494	-	△33	461	437	-	24	467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311	311	-	△5	307	291	-	16	274
알기 쉬운 법제 구축	519	519	-	△3	515	507	-	8	443

자료: 법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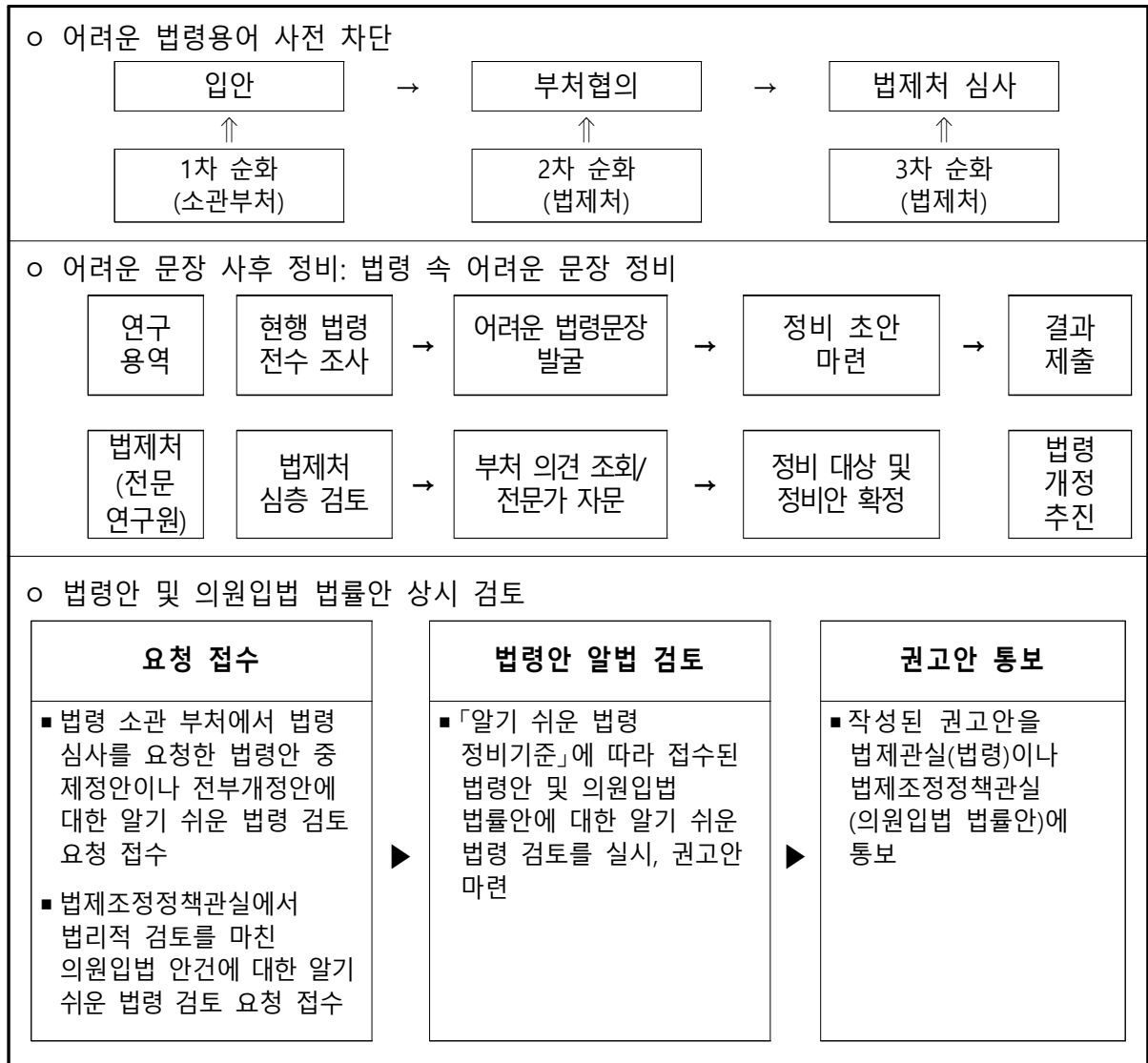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알기 쉬운 법제 구축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전차단 및 사후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2024년 예산에 총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 중 300만원이 전용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5억 1,500만원 중 5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제 구축 내역사업은 ① 입안 및 부처협의 단계에서의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②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사후 정비, ③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및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의 요청에 따른 의원입법 법률안 상시 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흐름도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개선하여왔음. 그러나 법제처가 2022년 2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²³⁾ 그동안의 용어 정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

23) 국민 인식조사 결과(’22년 2월/1,230명 대상),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 체계 48.5%라고 응답하였음.

수의 국민은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법제처는 2023년부터 기존의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로 주안점을 변경하여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법제처는 ‘문장정비’ 사업을 위해 1억 7,759만원을 집행하여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1, 2)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도 재산·가족관계 분야, 경제·금융분야 및 약관·계약서 분야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및 2024년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 개요 】

구분	용역명	연구기관	계약기간	집행금액
2023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배재대학교 산학 협력단	‘23.4.~’ 23.11.	5,929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1)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23.5.~’ 23.10.	6,000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2)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3.4.~’ 23.10.	5,830만원
2024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4.3.~’ 24.10.	6,800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4.3.~’ 24.10.	6,800만원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	(재)한국법령정보원	‘24.2.~’ 24.11.	4,000만원
합계				3억5,359만원

자료: 법제처

- 2023년의 연구용역 3건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에서 발굴한 문장 정비 건수는 총 1,976건이었음. 이 중 법제처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관 부처에 정비안 초안을 송부한 건수가 533건(27%), 이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여 선정된 최종 정비안의 건수가 323건(16.3%)임. 이 323건 중 개정이 완료된 건수는 2025년 6월말 현재 18건(0.9%)에 불과함.

【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 이후 정비 현황 】

(단위: 건수, 2025년 6월말 기준)

연구용역	용역 발굴	부처협의안 (법제처 초안)	최종 정비안 (부처 수용안)	개정 완료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1), (2)	815	333	222	16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1,161	200	101	2
2023년 계	1,976	533 (27%)	323 (16.3%)	18 (0.9%)
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800	168	69	—
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846	224	142	—
2024년 계	1,646	392 (23.8%)	211 (12.8%)	-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	6,942	991	—	—

자료: 법제처

- 2024년에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경제·금융 분야와 재산·가족관계 분야 2건의 용역에서는 연구기관에서 1,646건의 정비안을 발굴하였고, 법제처가 선정한 건수는 392건(23.8%), 이 중 부처가 수

용한 최종 정비안 건수는 211건(12.8%)에 불과하고, 아직 정비 실적은 없음.

- 2023년과 2024년 연구용역비 집행액만 3억 5,359만원에 달하고, 이 문장 정비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료도 5,240만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 중 최종 정비안에 포함되는 건이 채 20%에 미치지 못하며, 2024년(12.8%)에는 2023년보다 더 낮은 비율(16.3%)을 보이고 있음. 개정 실적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²⁴⁾
- 심지어 2024년 11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에 대해서는 2025년 6월말 현재 정비안을 다 선정하지도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매년 새롭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문장 정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최종 문장정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정비안의 경우 문장 속의 조사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만을 하고 있어 본래 조문도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정비 활동은 일반 국민이 법령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24) 문장정비의 경우 문장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령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 용어정비에 비해 보다 신중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수치임.

【 문장정비 최종안 예시 】

정비대상	최종 정비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	
제6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6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제11조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말고,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맡는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④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제1항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5조의5제1항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조의5제1항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제5조의5제1항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료: 법제처

□ 따라서, 문장정비 사업은 연구용역 아후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도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정비’에서 ‘문장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가. 결산 개요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은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6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법제 혁신	747	747	-	±16	747	669	-	78	486
일반수용비	75	75	-	15	90	88	-	2	54
임차료	10	10	-	1	11	11	-	-	10
일반용역비	20	20	-	△16	4	-	-	4	-
국내여비	8	8	-	-	8	8	-	-	8
사업추진비	4	4	-	-	4	4	-	-	4
일반연구비	190	190	-	-	190	155	-	35	-
정책연구비	440	440	-	-	440	403	-	37	410

자료: 법제처

나.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입법영향분석이란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과 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정비, 정부입법계획반영, 행정기본법 반영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됨.²⁵⁾
- 법제처는 2024년 행정법제 혁신 정책연구비 2억 6,200만원으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 2024년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 】

연번	계약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계약금액	계약방식
1	' 24.3.~' 24.10.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9,000만원	수의계약
2	' 24.3.~' 24.10.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민간자격증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9,000만원	수의계약
3	' 24.3.~' 24.10.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8,200만원	제한경쟁

자료: 법제처

25) 법제처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법제처가 사업을 총괄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2021.9.24. 법제처 보도자료).

- 입법영향분석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²⁶⁾ 분석의 결과 법제도의 개선 사항이나 일관된 법 적용 기준이 도출되어야 하고, 정비가 이루어졌을 때 분석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24년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제시된 8건의 개선과제 중 2건만이 정비되었고, 이 중 법령 개선사항이 아닌 행정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도 1건 있었음.

【 2024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현황 】

분야	개선과제	권고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1. <u>이상거래 조사 시스템 개선</u> 이상거래 조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에도 일정 유형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이상거래 조사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정비 예정
	2. <u>거래계약 체결일 명확화</u>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거래계약 체결일을 명확화하고, 관련지침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필요	정비 예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1. <u>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내실화</u> 사회서비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기관 공표 제도 등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품질평가 결과가 낮은 제공기관은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실시 필요	제도개선 (우수기관 공개, 금전 인센티브 제공 및 품질인증제 등)

26)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분야	개선과제	권고 결과
	2. <u>제공인력 역량 강화</u> 이용자에게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인력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 내실화 필요	정비 완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5. 1. 3. 시행)
	3. <u>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u>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정비 예정
민간자격증 제도	1. <u>민간자격 정의 규정 개선</u> 자격 명칭과 관련한 오인과 혼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국가자격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정비 예정
	2. <u>등록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u> 등록자格的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전 등록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갱신 시 자격 운영 기간 동안 운영현황 검토 및 정보 공시를 통해 등록자격 신뢰성 제고	정비 예정
	3. <u>미운영 등록자格的 직권말소 규정 도입</u> 실제 운영되지 않는 등록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정비 예정

-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중 하나인 ‘법제도 개선’에는 법령 정비 뿐 아니라 행정적 제도개선이 포함되고,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²⁷⁾
-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인데, 행정적 제도개선은 법령에 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예: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분석 결과 도

27)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출된 것²⁸⁾으로, 이러한 분석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별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도 있음.

- 법제처는 법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과제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타 부처 소관에 대한 행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법제처 업무와 관련있는 법령 정비과제 제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분석 주제 선정시에도 법령 자체가 제도를 형성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법령 등을 선정하여, 법령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개선사항이 법령 정비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주제를 보다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용역 한 건당 평균 8,73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다른 연구용역(법제처 전체 평균 건당 4,729만원)에 비해 평균 용역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용역에서 두세 건의 개선과제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소관 부처에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28) 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내실화는 용역 수행 과정 중 서비스지원단 실무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점²⁹⁾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9) 법제처가 2023년에 수행한 3건의 입법영향과제에서도 8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는데, 2025년 5월말 현재 이 중 2건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고, 1건은 법령이 아닌 행정적 제도개선과제였으며, 나머지 5건은 아직 정비되지 않음.

분야	제도개선과제	권고 결과
어린이안전관리	1. (어린이안전법 / 법률 체계) 총괄·조정 기반 강화	제도개선*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2. (어린이안전법/ 안전관리방안) 법령에 위험성 평가 방식 구체화 필요	정비 예정
	3. (어린이안전법 / 안전교육) 안전교육 개선	정비 완료
	4. (놀이시설법/ 응급조치 및 보상) 사고 대응 체계 및 보상 강화 필요	정비 완료
장애인 등록제도	1.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 필요(고시→법령)	정비 예정
	2.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 범위 합리화	정비 예정
위생용품 관리제도	1. 관리체계 보완 및 개선	중장기 검토
	2. 위생교육 내실화	정비 예정

8.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가. 결산개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은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을 전자적으로 구축·유지·관리하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정보화와 관련한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이 총 87억 4,400만원 편성되었고, 인건비(1001-100)로 300만원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87억 4,100만원 중 84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8,744	8,744	—	△3	—	8,741	8,435	—	306	8,046

자료: 법제처

나. 생성형 언어모델 법령정보서비스의 AI 환각 현상 대응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정부입법지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2024년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에 5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0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편성액	집행액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082	5,041
정부입법지원	2,166	1,9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33	330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18	117
처내업무행정정보화	435	431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운영	373	365
사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36	232

자료: 법제처

□ 그리고 동 내역사업 중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1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일명 ‘법제처 Lawbot’으로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음.³⁰⁾

□ 그런데, 지능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어로 검색할 경우 AI 검색 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상의 자연어로 대답해주는 것이 아닌, 관련 법령을 소개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는바,

검색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일상언어로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보임.

□ 이에 법제처는 동 내역사업에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으로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30) <https://law.go.kr/LSW/aai/main.do>

【 2024년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집행액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1,102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380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1,933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495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	126
합 계	5,041

자료: 법제처

- 문제는 학습을 통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AI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AI 환각은 AI 모델 중 특히 LLM(대화형 언어모델)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현상은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음.

민간이 아닌 정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법령정보의 오류는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봄.

□ 현재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는 검색 시 하단부에 “검색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AI 환각으로 인해 잘못된 법령정보가 제공된 경우의 위험성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미흡함.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령 전문가 투입을 통한 학습 데이터 생성과 질의응답 데이터셋 분석·검증으로 언어모델이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신뢰성 있는 검색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향후 법제처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가. 결산개요

-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는 해외 법제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이 있음.
 - (외국법제기관교류) 법제처와 해외 법제기관 간 상호 방문 등을 통한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전략을 도출함.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총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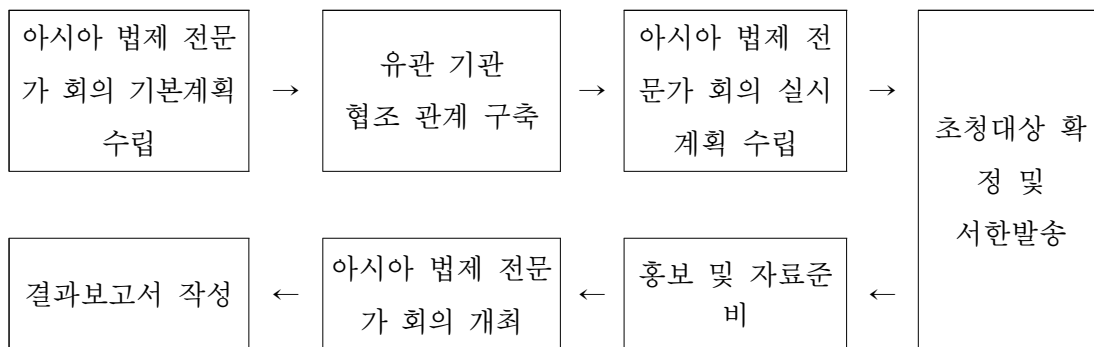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93	293	—	—	—	293	280	—	13	243

자료: 법제처

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고,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초청대상 확정 및 서한발송,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로 진행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 절차 】



자료: 법제처

- 동 내역사업에 물품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500만원 및 행사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 1억 7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1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2025 년 예산
	예산액		전년 도 이월 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 산	추경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17	117	-	-	117	114	-	3	117
일반수용비 (210-01)	5	5	-	-	5	5	-	-	5
일반용역비 (210-14)	107	107	-	-	107	104	-	3	107
국내여비 (220-01)	2	2	-	-	2	2	-	-	2
사업추진비 (240-01)	3	3	-	-	3	3	-	-	3

자료: 법제처

- 한편,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 예산 1억원 중 4,500만원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2025 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국법제기관교류	176	176	-	-	176	166	-	10	126
일반수용비 (210-01)	16	16	-	-	16	16	-	-	16
임차료 (210-07)	2	2	-	-	2	2	-	-	2

국내여비 (220-01)	1	1	-	-	1	1	-	-	1
국외업무여비 (220-02)	50	50	-	-	50	50	-	-	50
사업추진비 (240-01)	7	7	-	-	7	7	-	-	7
정책연구비 (260-02)	100	100	-	-	100	90	-	10	50

자료: 법제처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법제처가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태국·캄보디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해당 국가들과 2024년 11월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협의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법제처에 따르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2025년 하반기 출범 예정으로, ① 미래 법제쟁점 공동연구, ② 법제행정 협력, ③ 법령정보 협력, ④ 법령정비 경험공유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운영계획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법제 개선 및 발전전략을 도출한다는 목적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그 취지에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법제처가 선정

한 그해의 주제에 대한 법제 전문가의 참여로 운영되는 것으로 상시적·연속적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국가의 법제기관이 상호 논의하는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보다 넓은 범위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임.

- 하지만 2024년 11월 1일 개최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참석자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부총리,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등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가가 예상되는 국가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연계하는 등 양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 고 자 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1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2021년 1월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건물대여료 · 연체료 · 변상금 및 가산금 등 채권 금액 전액이 회수 되었으나 2010년 건물대여료 연체로 발생한 국가채권이 10년(2011년 말 법제처로 관리전환된 이후 약 9년)이 넘게 회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국가채권의 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불필요한 재판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장기 미수납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등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것	제도 개선	○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학습 모임을 가지는 등 업무 담당자의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에 관한 이해와 교육을 강화하였고, - 향후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음.
○[지적사항] - 법제처는 기관운영경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모든 공무원 근로자에게는 반기별로 5만원에서 15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음. - 법제처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를	제도 개선	○ 전체 공무원 근로자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받은 공무원 근로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기타운영비를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방식과 유사하게 전체 공무원 근로자 중 일부에게 지급 금액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지적사항] - 2022년 7월 4일 기준 국내 점유율 1위인 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 “법제처”, “여기로”, “법제처 여기로”를 검색해도 찾기가 어려웠음. - 2022년 8월 23일 현재는 “여기로” 및 “법제처 여기로”로 네이버 검색 가능하나, “여기로” 사이트에 방문해도 결국 법제처 블로그 링크로 이어지는데 그 개설 취지를 알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홍보플랫폼 “여기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홍보플랫폼 ‘여기로’ 개설(2017.5.) 후 5년간 운영효과와 홍보환경 변화를 감안*했을 때 사이트의 유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중단 조치하였음. * ‘여기로’ 방문자 감소 및 법제처 SNS 활성화 ○ 방문자가 감소하는 ‘여기로’ 대신 국민들이 많이 찾는 법제처 SNS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내역사업은 매월 “법나들이”를 발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 여러 단체 및 개인에게 매월 1만부 이상 배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2억 3,8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므로, 책자 배포의 효과성에 대해 고민하고,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분야별 법령정보 필요도를 조사해 배포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나들이’ 책자 배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	제도 개선	○ 2022년 10월~11월 실시한 2022년 법나들이 만족도 조사에 희망 배포처 및 법령정보 분야 등을 문항에 포함하였음. ○ 응답자의 90.6%가 법나들이를 온라인으로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층을 위해 책자 발간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노인정, 마을회관, 도서관, 군부대 등이 효과적인 배포처로 추천되었음. ○ 2023년 2월호부터 ①법나들이 전용 SNS채널(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하여 온라인 배포 확대 ②우체국을 배포처에서 제외, 도서관(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을 추가하여 배포 수량을 조정(11,343부 → 8,473부) ③노약층을 위해 책자를 더 큰 규격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관 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 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 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 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의 경우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도록 규정함. - 법제처는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 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 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예산 집행을 최근 4년간 반복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연례적인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을 자제할 필요 가 있으며, 방송용 홍보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여 홍보영상 제작비의 경우 예산안 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 선할 것	주의	○ '23년 예산에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일 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이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분야 · 주제별로 요약하여 영어 · 중국어 · 태국어 등 12개의 언어로 해석 ·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어 콘텐츠 서비스는 다른 부처의 재한외국인 대상 관련 사업(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사업 간 차별성은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와 타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생활법령정보 연구 인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령 교육에 출강(22년, 총12회),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영문 리플릿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 · 홍보(약 420곳, 4,000부, 10. 21.),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생활법령콘텐츠 개발방안 등 논의(11.18.), 생활법령정보 및 다누리 홈페이지 상호배너 등록(11.24.) ○ 앞으로도 타사업과의 차별성은 유지하면서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는 사업의 대상 · 목적,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이 다름.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교육과정(정규교육 약 500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 제공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법률안 제출계획”의 실제 이행률은 53.7%에 불과 - 2021년 산자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 제출계획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음. - 「국회법」 제5조의3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는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제처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제시하는 등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입안부처의 입법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배포 및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법령입안지원,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등 법제지원제도 및 활용방법을 안내(수립지침 배포 '22년 10월 31일/법무담당관회의 '22년 12월 9일) -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률안 소관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제업무평가 지표 중 정부입법계획상의 법률안 철회 시 감점 가중치를 확대(건당 -1 → -1.2)하고, 정부입법 추진성과·노력 부문의 가점 배점을 확대(3점 → 5점)하는 등 전년도 평가지표를 개선·적용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 이행률 제고를 유도
○[지적사항] - 국민이 법령안의 취지 또는 내용에 관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용어·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의 참	제도 개선	○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진단하고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여인데, 2018년 이후 각 부처가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부처 협의안을 검토하여 사전에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2021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국민참여단 의견 23,805건 중 207건만 사전차단 대상용어로 법제처에서 채택되었으며, 법령에 반영된 것은 124건으로 반영률이 0.5%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 (구조적 측면) 온라인을 통해 상호 소통하여 숙의된 개선의견 도출 및 입법 예고안 외 현행법령, 차별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위 확대 - (운영적 측면) 법제처의 적극적인 방향성 제시 및 용어정비 추진 주도 등 역할 강화,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확립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효과성 측면)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강화 등 국민 체감 성과 도출, 사업성과가 드러나는 성과 지표 개선 및 국민참여단 선발제도 개선 ○ 사업개편방안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 연도별 입법컨설팅 및 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실적을 살펴보면, 입법컨설팅 실적은 2017년 172건에서 2021년 4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검토실적은 2017년 114건에서 2021년 61건으로 감소하여 입법컨설팅 건수 중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마치는 비율은 2017년 66.3%에서 2021년 12.9%로 감소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	제도 개선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긴급 검토요청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하였음. - 알기 쉬운 법령 검토실적: ('21년) 61건 → ('22년) 131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법컨설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행 시 긴급 검토요청을 제외하고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거치도록 노력할 것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법제교육 사업 총 9건의 연구용역 중 4건의 교재개발 용역을 하나의 업체(주메이선)가 수주하였음. - (주메이선은 2016년 「독립된 전문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한 법제교육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3,500만원), 2017년 「법제교육 운영 계획 고도화 조직진단 및 교재구성 연구」(3,200만원) 등 교재개발 이전에도 법제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해온 업체임. - 2021년의 경우 3건의 연구용역 중 2건은 (주메이선이 수탁하였고, 나머지 1건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수탁하였는데, 두 기관은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주메이선의 대표이사가 동 학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등 사실상 유관업체에 해	주의	○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 다양화를 위해 교재개발 용역 입찰공고 홍보수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및 부처 웹사이트 홍보 외에 교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용역 관련 사항 적극 안내할 계획임. ○ 또한 교재개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당함. ○[시정요구사항] 교재개발 관련 용역을 특정 기관이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제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홍보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지적사항] - 행정기본법제 개선(1034-302) 사업 내 일반연구비 예산 1억 8,0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함. 1억 6,100만원의 집행액은 2건의 연구용역을 위해 집행됨. 2건의 연구용역 중 “행정기본법 해설서 연구”는 「행정기본법 해설서」로 발간되어 약 3,000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됨. - 발간 예산으로는 2021년 12월 24일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3,700만원이 지출됨. - 2021년 4월 이미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음에도, 한국행정법학회에 7,100만원을 지출하여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3,700만원을 지출하여 책자를 발간·배포함. - 또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법제처는 행정법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하였음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어울리는 결과물로 보기 어렵	주의	○ 2022년에는 행정법제 혁신 연구 용역 추진 시 연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앞으로도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다고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행정 기본법제 연구용역 발주 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할 것		
○[지적사항] - 2018년 이후 매년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제처는 2018년 이후 매년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2019년과 2021년의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2021년은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현원이 오히려 감소 - 법제처가 2020년 외에 2018년 · 2019년 · 2021년 10명 이상 정원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의 효율화 방안, 현원 확보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현원 부족 심화, 인건비 불용액 증대 등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연례적인 휴직 및 파견 인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정 · 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며,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에 따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 도 개 선	○ '22년에는 주기적으로 휴직 등 인사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인력총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채 4명, 경채 2명 외에도 일반임기제 7명, 전문임기제 2명, 일방전입 8명 등을 적극적으로 총원하였음. - 이로써, '22년 연말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6.2명으로 '21년 말 대비 결원수를 대폭 개선하였음.('21년 △15.3명 → '22년 △6.2명) ○ 또한, 2023년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최근 인건비 불용률을 감안하여 보수 상승분, 처우개선율 및 정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 인건비 부족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전년동으로 편성하였음.

○ 2022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공무직 근로자 중 행정지원인력 25명에 대해서 6단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6년 차 이상 근로자가 25명 중 13명임을 고려할 때 현행 호봉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호봉 급간 상승률이 1%에 불과한바, 타 부처 공무직 호봉체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기간제근로자 연구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임금보전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최저호봉과 최고호봉 간 기본급 차이를 증가(기존 1만원 → 10만원)시키는 등 장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체계 개편을 추진함.
○[지적사항] 20대·21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제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이견이 충분히 검토·해소되지	제도 개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모니터링을 강화(상시)하고 조정 수요조사(분기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법안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이견 조정 기능을 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아니한 채 법안이 의결되어 해당 법 규정을 근거로 한 실무 집행이 어렵 거나 부처 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 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정 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견을 신속 히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화하였으며. - 그 결과, '23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 최 횟수와 협의회 상정 안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음 * (연도) 협의회/상정안건: ('22년) 48회/76건 → ('23년) 96회/108건 ○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합리 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부입법 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 력하겠음.
○[지적사항] -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및 사 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비목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일반 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였음. 또한 법제처는 지난해 「2021연도 법제처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적(2022. 8.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받은 이후에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을 동일 하게 반복하였음(2022. 10. 17. 홍보	제도 개선	○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 산부터는 비목내역을 개선하여,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영상제작비용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에 편성 하여 운영 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콘텐츠 제작)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홍보 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총 221억 900만원 중 2,500만원을 동일 사업 내 전용하고 20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800만원을 불용함 - 최근 4년간 법제처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인건비가 정원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 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것	주의	○ 인력수급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등을 통해 '22~'23년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약 10억 원씩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 불용액 ('21) 2,395백만원 → ('22) 1,338백만원 → ('23) 343백만원 ○ 향후에도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및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법령해석과 관련한 법령 해석 요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예상 소요기간, 추후 처리 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법령해석이 있는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로 법령해	제도 개선	○ 법령해석 안건 접수 시 요청자에게 예상 소요기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문자로 알려 법령해석 요청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령해석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안내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석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재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령해석은 법령의 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령해석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련한 소요기간,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치할 것		도록 개선함. ○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정부는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2022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제출률이 46.1%로 낮고 계획 법안의 수정률 또한 116.4%로 높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충실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의	○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입법계획 철회 시 적용되는 감점 가중치를 확대하였음. - 또한, 소관 부처의 책임감 있는 정부입법계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후 정부입법계획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의 시급성, 세부 입법추진 일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음.

○ 2023회 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근무로 인해 기타직보수가 부족하게 되어 보수(110-01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것	주의	○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고자, 기타직보수 예산 부족분을 미리 산출하여 '2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용이 이루어졌음 -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계획되	주의	○ '24년 및 '25년 예산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지적사항]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제처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시근로자로 채용하여 법률사무 경험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 - 2023년 모집 계획인원 7명 중 2명(채용률 30%) 채용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21년 60%, '22년 75%, '23년 30%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 지역적 한계로 인한 채용·관리 상 애로 및 예산집행 부진 등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5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지적사항] 현재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실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계인으로 민원인 참여 건수 및 적극해석 건수 등 법령해석 업무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였고, - 그 결과 '24년 민원인 참여 건수와 적극해석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연도) 민원인 참여/적극해석: ('23년) 50건/56건 → ('24년) 52건/57건 ○ 앞으로도 법령해석 업무에 투입된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되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	제도 개선	○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을 본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본협의회를 개최하여 7건의 이견조정을 완료함.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본협의회)에서 미조정된 안건은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지적사항]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도 회의 참석 용이성 등을 이유로 별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회의실의 이용률이 저조함 - 법제처는 2023년 3월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완료하였는바, 동 회의실 조성에 2,180만원 집행 - 영상회의실 공사 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회의 개최 33건 중 22건은 영상회의실 이용(이용률 66.7%), 11건은 외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699만원 집행	제도 개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하기 위해 2025년 외부회의실 이용을 축소(6회→4회)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회의실 임차료 예산을 감액(1,680천원)하여 편성함. ○ 앞으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불필요한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영상회의실 이 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할 것		
○[지적사항] 법제처는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부처 의견조치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인용법 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관 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오류를 신고받아 검토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행성을 점 검하고 있음 -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 령의 경우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 으나 현재 시행예정 법률 안내 서 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시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령을 국민에게 '찾기 쉽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현 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 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 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 으로 AI 생성형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 업 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안내 관련 관 리시스템을 '25년 상반기 내 마련하여 주 요한 시행 예정 관련 콘텐츠에 개정 후 시 행 전 법령 링크를 안내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법제처가 총괄·조정하고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자주 수정되고 국회제출 비율이 낮아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떨어 지는 상황임 -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의원입법 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 더라도 최근 5년간 계획대비 국회제 출 비율이 50%임 - 다만, 계획 준수를 강조하는 경우 부 처가 정부입법을 회피하거나 긴급한 입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 개선	○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 방안* 마 련('24.10월) * 입법환경 대응을 위한 수정입법계획의 체계적 활용, 법률안 제출 시기의 전략적 안배, 정부입법계획 이행 관리 강화, 실적 및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기반영 ('24.10월) 및 25년도 법제업무평가 시행계 획에 반영('25.4월) ○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예비검토 시 부처간 이견 등 쟁점 사항을 고려하여 준수할 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 존재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있는 일정이 되도록 조정
○[지적사항] 법제처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를 주안점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 개선	○ 문장 구조를 읽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비 효과가 있음. ○ 다만 우려하고 있는 문장 구조 개선으로 인한 법령 내용 변경 가능성을 방지하고, 문장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용역 관리 및 결과물의 면밀한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용역수행 시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 국어 문법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교차 검토하도록 관리하였고, - 법제처 검토 단계에서 법령 소관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안을 신중하게 확정하고 있음. ○ 또한, 최종 정비안 중 문장 구조의 단순 개선과 같이 경미한 정비 사례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입법 수요를 고려하여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수요 폭증 등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문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지적사항] 2023년 법제처는 3건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 등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	○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등에 있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것		
○[지적사항] 어린이법제관 수료기준이 낮아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수료율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후 일정 점수를 적립하면 수료할 수 있는데, 활동별 참여점수(10~20점)에 비해 수료기준(50점)이 낮음 - 2023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60.1%(모집인원 1,300명 중 782명 수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료기준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	제도 개선	○ 어린이법제관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인 어린이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 어린이의 수료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입법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생활법령 내용을 단순 게시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퀴즈를 풀도록 하는 참여형 쌍방향 온라인 퀴즈 이벤트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24년 9~10월) - 수료율이 저조한 비수도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 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음. * 비수도권 지역 내 어린이들끼리 법률 정보, 응원 등의 메시지를 교류하고 법 도서 관련 토론을 하는 등 지역 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유도('24년 11~12월)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회의에 참여한 적은 없는 국민법제관이 2023년 기준 31.5%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국민법제관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미미하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등 유사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23년 기준 국민법제관 200명 중	제도 개선	○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 저조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 폐지를 결정함. - 국민법제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어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25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31.5%(63명) 회의 불참, 설문조사를 포함 의견 제출한 적이 없는 국민법제관 6.5%(13명) ○[시정요구사항]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